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53호 2011. 10. 19. (수)

##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113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11-117호 2011년 정선군 수렵장 설정고시..... 2
- 정선군고시 제2011-118호 도로명주소 고시..... 9

##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54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1
- 정선군공고 제2011-547호 예미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재 공고..... 21
- 정선군공고 제2011-559호 정선군 정암사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안 공고..... 33
- 정선군공고 제2011-560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34
- 정선군공고 제2011-561호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입안·열람공고..... 37
- 정선군공고 제2011-567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 정선군공고 제2011-570호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3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1-08호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48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1-09호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3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1-113호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1. 10. 6

정 선 군 수

- 1. 입산통제구역 :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산2번지의 8,376필지
- 2. 입산통제면적 : 12,768ha(관내 민유림의 33%)
- 3. 입산통제구역 및 개방·폐쇄 등산로 내역 : ‘붙임’ 참조
- 4. 입산통제기간 : 2011. 11. 1 ~ 2011. 12.15
- 5.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 6. 유의사항

가. 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림,숯가꾸기,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 ②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 ③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 ④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 ⑤ 산림 안 주민의 일상생업상의 입산
- ⑥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 ⑦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법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향 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
- ⑧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 ⑨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정선군 고시 제2011-117호

## 2011년 정선군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정선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17.

정 선 군 수

1. 수렵장의 명칭 : 정선군수렵장  
(수렵구역 : 883.36km<sup>2</sup>/ 금지구역 : 336.18km<sup>2</sup>)
2. 존속기간 : 2011. 11. 1 ~ 2012. 2. 20(약 4개월간)
3. 수렵기간 : 2011. 11. 1 ~ 2012. 2. 20(약 4개월간)
4. 관리사무소의 소재지  
◇ 10개소(본청 1개소 / 읍·면 9개소)

관리소 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033-560-2345
정선읍사무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10-1번지	033-560-2602
고한읍사무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	033-560-2612
사북읍사무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48번지	033-560-2622
신동읍사무소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59번지	033-560-2632
화암면사무소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	033-560-2642
남면사무소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3-1번지	033-560-2652
여량면사무소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05-5번지	033-560-2662
북평면사무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2-2번지	033-560-2672
임계면사무소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73-1번지	033-560-2682

5. 수렵장 사용료

엽 구 별		기 간 별	기 간 별 (천원)			
		엽기내	30일	10일	5일	
1종 (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10	310	260	210	
	황색포획승인권	310	260	210	160	
	청색포획승인권	210	160	110	85	
1종 (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60	210	160	110	
	황색포획승인권	210	160	110	85	
	청색포획승인권	160	130	85	55	
2 종		1종(공기총)과 같음				

6. 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분	야생동물명	포획제한수량	비고
적색	멧돼지	엽기내 1인 6마리	황색, 청색 포함
황색	고라니	엽기내 1인 3마리	청색포함
청색	청설모	엽기내 1인 3마리	
	멧비둘기, 수평, 참새, 까치, 어치	1일 1인 각 5마리	

7.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수렵방법>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신고(5일 이내)전에는 정선군 수렵장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가공금지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엽건사용>

- 1인 엽건 1마리로 엄격히 제한
-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엽건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건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엽구사용>

- 엽총(라인폴총 제외), 공기총, 활(석궁 사용제한), 낚시, 그물만 허용

8. 수렵인의 수

가. 최대수용 인원 : 500명

나. 30일이하 승인신청자와 최대수용인원 미달될 경우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 사용료의 반환

- 수렵장 개장 이후(2011.11.1)에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 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수렵금지구역	면적(km <sup>2</sup> )
1) 야생동물보호구역	0.32
2) 생태·경관보전지역	34.96
3) 공원구역 (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38
4) 도시지역	55.2
5) 문화재보호구역	4.19
6) 관광지 등	0.42
7)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보호림, 수목원	128.13
8) 능묘, 사찰, 교회의 경내	0.12
9) 도로로부터 100m이내 (단, 도로를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600m적용)	50
10) 기타(백두대간보호지역)	60.46
계	336.18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 발급

< 수렵대상자 선정 >

**엽기내** 사용료 중 해당하는 포획승인서 사용료를 선착순으로 통장계좌에 입금한 신청인에 한하여 포획승인서를 발급하여 수렵을 허가함.

◇ 입금일자 : 2011년 10월 20일 09:00 ~ 수용인원 만료시 까지

◇ 입금계좌 : 농협 301-0091-6618-11 (예금주 : 정선군청)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이 안 될 수도 있음.)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본인 1구좌)

※ 입금시 반드시 수렵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사람명의(성명+전화번호)로 입금  
예)홍길동 0101234567

※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시 첨부요망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 엽기내 이외(30일, 10일, 5일)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 포획승인 >

◇ 접수방식 :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 팩스접수

- **팩스접수 번호** 033)560-2589 (접수처 :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 접수일자 : 2011년 10월 24일 ~ 2011년 10월 28일(5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사용료 입금표(사본) 1부,

※ 포획승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 신청서상 추가 기재할 사항

- 포획승인서 사본필요시에는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우편물 직접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 신청서작성미비, 확인불가 및 입금확인 불가로 인한 승인서

미발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 엽견의 관리는 수렵인이며, 불법 울무로 인한 부상, 폐사에 대하여는 수렵인 책임이며, 정선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수렵안내지도에 수렵관련 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주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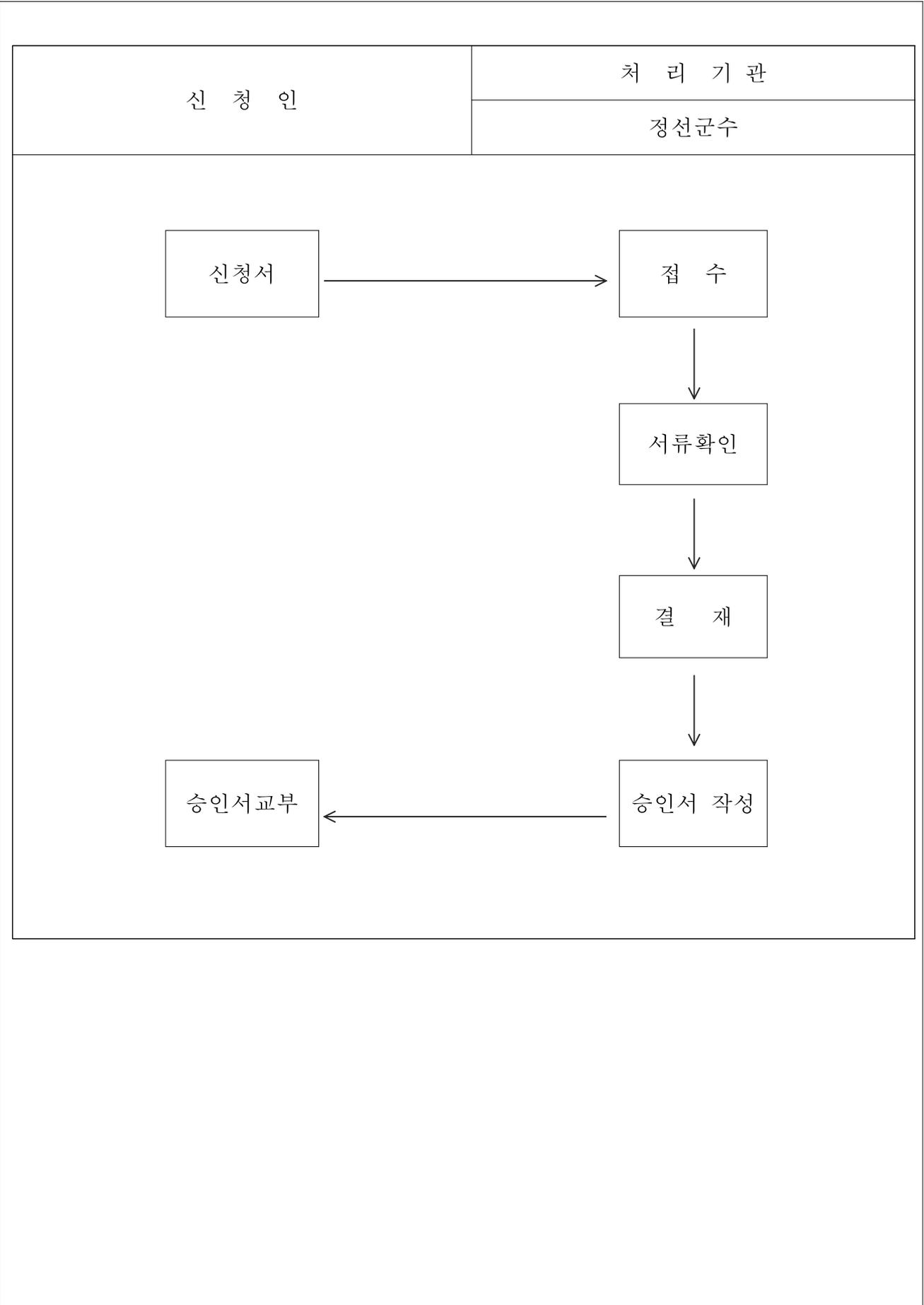
붙 임 : 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식 1부.

11. 기타 문의사항

○ 문의전화 :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033) 560-2331, 2345, 2347

○ 주 소 : (우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수렵 포획승인증 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

□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2. 수렵면허증(사본) 1부
- 3.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 4.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 5. 사용료 입금표(사본) 1부,

※ 포획승인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

※ 신청서상 추가 기재할 사항

- 포획승인서 사본필요시에는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우편물 직접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 신청서 작성 미비, 확인불가 및 입금확인 불가로 인한 승인서 미발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1-11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17.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룡동길 41-8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b>별지내역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비치</b>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560-21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10.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정선군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NO	종전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1	강원도정선군남면유평리 397-10	강원도정선군남면칠현로 268-11	2009. 5. 11	거칠현동이소재하며옛현인들의 충절을기리는의미에서반영	건물신축
2	강원도정선군남면무릉리 751-1	강원도정선군남면자뫼골길 180-15	2009. 5. 11	골짜기가 동서양으로 자처럼 생겼다하여 유래된 지명인용	건물신축
3	강원도정선군북평면남평리 1292-1	강원도정선군북평면문화마을길 28	2009. 5. 11	문화마을이라는지명인용	건물신축
4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 78-9	강원도정선군사북읍소금강로 3290-27	2009. 5. 11	구간내 산수가 수려한 정선소금 강이 소재함을반영	고시누락
5	강원도정선군여량면여량리 207-5	강원도정선군여량면여량6길 30	2009. 5. 11	법정리(여량리)명인용	건물신축
6	강원도정선군정선읍용탄1리 389	강원도정선군정선읍비룡동길 41-8	2009. 5. 11	비룡동이라는지명인용	건물신축
7	강원도정선군정선읍애산리 740-4	강원도정선군정선읍새터길 26-8	2009. 5. 11	새터라는지명인용	건물신축
8	강원도정선군남면유평리 484-1	강원도정선군남면소마평길 1-62	2009. 5. 11	남창으로 왕래하는 주막거리에 서 말을 잠재우는 마을이란 뜻에서 불린 옛지명 반영	건물신축
9	강원도정선군여량면남곡리46	강원도정선군여량면송원동길 203-26	2009. 5. 11	옛날이곳에 원님터가있다하여 불려진옛지명 반영	건물신축
1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368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달탄2길 61	2009. 5. 11	마을모양이 반달형으로 되어 있다하여 불려진 지명인용	건물신축
11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 356-178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1길 25	2009. 5. 11	법정리(사북리)명인용	건물신축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1-54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정 선 군 수

- 1. 규 칙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개정취지
  - 성매매를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유형에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이 개정(2011.7.18.)되고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일부 개정 표준안」 이 통보(2011.7.27.)됨에 따라 이를 우리군 징계양정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성매매 징계기준 마련 : 안 제2조 별표1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 안 제7조 별표5
-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FAX 56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560-2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③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제4조제1항(징계의 감경)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음주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b>성매매</b>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5]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u>경징계</u>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 기준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u>경징계</u> <u>또는</u> <u>중징계</u>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 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u>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u>	중징계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음주운전 횟수는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사면된 전력도 포함
<u>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u>		6. <u>“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u>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징계양정기준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경우
비위의 유형					비위의 유형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나.(생 략)					가~나.(헌행과 같음)				
다. 성희롱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음주사건 처리기준 [별표5]

현 행			개 정 안	
유 형 별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장계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장계	(현행과 같음)	경장계 또는 중장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장계	< 삭 제 >	< 삭 제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중장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현행과 같음)	경장계 또는 중장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장계	< 삭 제 >	< 삭 제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현행과 같음)	중장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현행과 같음)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중장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관계법령 발췌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4.(생략)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하 생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나.(생략)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라.~마.(생략)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li> <li>○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li> <li>○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li> </ul>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100

정선군 공고 제2011-547호

### 예미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재 공고

우리 군에서 조성중인 『예미농공단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통합지침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 재 공고합니다.

2011. 10. 10.

정 선 군 수

#### 1. 농공단지 개요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 조성면적 : 107,261m<sup>2</sup>
- 준 공 일 : 2010. 10. 21
- 건축가능시기 : 농공단지 분양즉시
-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 2. 분양대상

- 공장용지 : 67,796m<sup>2</sup>(12개 블록)
- 최소 분양면적 : 1,650m<sup>2</sup>

#### 3. 공고기간 : 2011. 10. 10 ~ 2011. 10. 31 (22일간)

#### 4.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1. 11. 01 ~ 2011. 11. 20(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기업지원팀 (☎033-560-2350)
- 제출서류 : 분양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업체 소개서 1부

#### 5. 유치업종

- 음식료품 :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 목재종이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16),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17)
- 기 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지역특화업 : 식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기타 제품제조업(33)
- 기타제조업 : 기타 제품제조업(33)

[입주제한 업종]

- ①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②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 ③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사업장
  -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악취,소음,진동,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제조업이나,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입주 금지 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를 제한

6.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

7. 입주우선순위

- ① 정선군 이전을 위하여 협약(MOU 등)을 체결한 업체
- ② 수도권 및 타 시도 지역에서 본사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이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문 가공공장을 이전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
- ③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체
- ④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공해가 적은업체
  - ※ 위 사항에 불구하고 정선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함

8. 분양가격 : 68,367원/m<sup>2</sup>(3.3058m<sup>2</sup>당226,008원)예상

- 농공단지조성공사 준공 및 사업비 정산 후 분양가격 증감 조정

9. 분양조건

-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납부조건

구 분	계 약 금	잔 금	비 고
납부시기	입주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금액	10%	90%	

-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100% 완납 시

10.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군보, 홈페이지 게시문), 유의사항 내용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의 협의내용,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포함)와 건축·주차장 등에 관한 관련법규, 정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우리 군 조례 등의 제정·개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 신청인은 토지의 조성상태·현황(형상, 고저, 연약지반, 암반, 법면 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토지 사용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 대표자의 가족, 임원, 주주명의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주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함.
- 각종 열람도서는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비치되어 있고, 열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별첨“)
- 분양신청문의 : 정선군청 기업지원팀(전화 033-560-2350)

<별첨1>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li> <li>○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 </ul>
분양·입주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계약서 사본 1부</li> <li>○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li> <li>○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 <li>○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li> <li>○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 : 지정계좌에 입금후 입금증 사본 제출 농협224-01-017101 예금주: 정선군청</li> </ul>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입주신청 후에는 신청사항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첨2>

## 분 양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휴대폰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은 소재지)			
	공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위 치	예미농공단지	블럭번호	필지번호
	신 청 면 적	m <sup>2</sup>		
	업 종		분 류 번 호	
	생 산 제 품			

확 약 사 항

입주선정후 정선군이 지정하는 기간내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인)

###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대기, 수질) 종별(1~5종) 확인서류  
2. 공장등록 증명원(분양공고일 이전 등록업체에 한함)

<별첨3>

# 사 업 계 획 서

2011 .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회사개요

기업체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사업장의 주소	
사업목적	
주요사업	
종업원수	
자본금	
결산일	
홈페이지	

 자산현황

구분	세부내역	면적	평가금액	내역
공장	토지			
	건물			
물류 및 연구소	토지			
	건물			
기계				
기타				

회사연혁

- 회사연혁
- 특허, 인가, 허가, 상표출원 등

회사소개

- 대표임원
- 경영시스템, 실적, 기타

주요거래처

- 
- 

지적재산권

- 특허권

번호	출원명	출원 및 등록일	출원 및 등록번호	비고

- 상표권

번호	출원명	출원 및 등록일	출원 및 등록번호	비고

- 기타 논문 등

번호	논문명	발표일	발표지	비고

연구소 현황

- 
- 
- 

사업추진 배경

- 
- 
- 

사업추진 목적

- 
- 

사업추진 범위

- 필요 설비
- 시설 규모
- 고용 인원
- 입지 지역

투자계획

- 
- 
-

자금조달 및 운용방안

- 자금조달
- 자금운용방안

중장기 경영계획

- 회사경영 전략
- 마케팅전략
- 매출계획

제품소개

- 
- 

사업효과

- 고용효과
- 소득효과
- 경제효과
- 해당지역 환경오염도 해소 방안
- 다른 업종과의 연계성
- 기 타

건의사항

- 
- 
-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 공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부.
3. 재무제표 1부.
4. 직전분기 부가세확인 증명원(세무서) 1부.
5. 대표이사 경력사항 1부.

# 용도별구획 평면도

## 예미농공단지 산업단지 계획



**개발 계획 평면도**

**범례**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획지번호
- A-공정시설용지
- A1(공정용지)
- B-공정시설용지
- B1(도로)
- B2(주차장)
- B3(소공원)
- B4(중수이용시설)
- B5(폐수중립처리장)
- B6(오수저류지)
- C-녹지용지
- C1(완충녹지(녹지))
- C1(완충녹지(구거))

SCALE = 1 / 1200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소속	(주)한도엔지니어링	정선군	정선군	
직위	상무	기밀지원담당	지역경제과장	
직명	도시계획기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원	
성명	남상광	문용태	최달순	
확인인				

정선군 공고 제2011-559호

정선군 정암사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안 공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지정·고시할 예정인 전통사찰 제21호 정암사 전통사찰보존구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선군청 관광문화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암사 전통사찰보존구역 내역

소재지	지번	수량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고한읍 고한리	1번지 외 8필지	9필지 24,914㎡	정암사, 국토해양부	고한읍 고한리 산213	

2. 의견제출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033-560-2549), 관련 지적도면 군청 열람가능

2011. 10. 19.

정 선 군 수

## 정선군 공고 제2011-560호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에 등록된 불임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0. 11.

정 선 군 수

1. 제 목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 10. 11. ~ 2011. 11. 09.(30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티파니전당사의 25개 대부업체 (불임 참조)
4. 공고내용
  - 가. 우리군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사무소 소재불명,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위 기간까지 통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등록이 제한됩니다. (동법제4조)
5. 위 처분에 대하여 의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한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대부업체 명단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주 소	성명	대부업 종 류
1	강원-753	2009-03-23	티파니전당사	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04-11	양철인	금전대부
2	강원-1342	2008-11-05	미래전당사	정선군 사북읍 사북4리 356-88 2층	박창진	금전대부
3	강원-1342	2008-11-28	보석전당사	정선군 사북읍 사북4리 356-88 2층	박창진	금전대부
4	강원-1343	2008-11-05	제일금융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3 삼보빌딩1층	심광섭	금전대부
5	강원-1356	2008-11-27	승리전당사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23	이명현	금전대부 금전중개
6	강원정선2009-대부26 강원정선2009-대부중개6	2008-12-04	천운전당사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6-2	이창준	금전대부 금전중개
7	강원-1402	2009-02-11	매인전당사대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24	이정아	금전대부
8	강원-1412	2009-02-19	팔도전당사대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6	김경한	금전대부
9	강원-1439	2009-03-30	연세전당사대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선명오피스텔802호	이현주	금전대부
10	강원-1453	2009-04-21	돼지꿈전당사대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94	서일섭	금전대부
11	강원-1454	2009-04-24	신용전당사대부	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62-226	연미상	금전대부 금전중개
12	강원정선2009-대부18	2007-06-28	돼지전당사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선명오피스텔801호	전영준	대부업
13	강원정선2009-대부54	2009-09-08	노다지대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10	궁용연	대부업
14	강원정선2009-대부58	2009-09-22	보스전당사대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11	안희대	대부업
15	강원정선2009-대부64	2009-10-21	천안대부전당사	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66-9호 A동202호	전완수	대부업
16	강원정선2010-대부2	2010-01-13	부산전당사대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41 외1필지	이병주	대부업
17	강원정선2010-대부5	2010-02-10	갈을대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선명오피스텔803호	김성수	대부업
18	강원정선2010-대부9	2010-03-04	VIP대부전당사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142	강명규	대부업
19	강원정선2010-대부15	2010-04-07	골든대부전당사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6301호	정봉주	대부업
20	강원정선2010-대부22	2010-05-17	갯밭대부전당포	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20-4	서정대	대부업

21	강원정선2010-대부25	2010-06-15	중흥전당사대부	정선군사북읍사북리294-14번지 선명오피스텔412호	신근혜	대부업
22	강원정선2010-대부36	2010-09-02	뉴대부대성전당 사	정선군사북읍사북리356-88	박재돈	대부업
23	강원정선2010-대부41	2010-10-14	은하대부전당사	정선군사북읍사북리365-7	정수영	대부업
24	강원정선2011-대부14	2011-04-06	락희대부전당사	정선군 고함읍 고함12리 121-13번지	김정은	대부업
25	강원정선2011-대부23	2011-06-07	신화대부전당사	정선군사북읍사북리294-14 선명오피스텔1010호	유현호	대부업
26	강원정선2011-대부25	2011-06-14	아이티머니대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78	박종원	대부업

정선군 공고 제2011-561호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입안·열람공고**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공고한 사항 중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7일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위주의 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주택수요에 부응하고자 사북읍 사북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2.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1) 용도지역 :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 81,088㎡ ⇨ 0㎡ (감 81,088㎡)
    -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 0㎡ ⇨ 81,088㎡ (증 81,088㎡)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1) 사북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A=81,088㎡
  - 다. **군계획시설결정(신설)**
    - 1) 교통시설 : 중로 1개노선 / 739m
    - 2) 공간시설 : 경관녹지 2개소 / 1,178㎡
  -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A=81,088㎡
-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도시건축과, 사북읍사무소
-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11.10.17 ~ 2011.10.31까지)
-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기간내 정선군 도시건축과, 사북읍사무소에 서면제출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560-2132, 21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1-567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10. 14.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청소년 장학센터의 명칭, 기능, 위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건립한 청소년장학센터의
  - 명칭을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으로
  - 기능을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 활동
    - 청소년 열린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위치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으로 정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0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주민생활지원과 전화:(033)560-2015, 팩스:(033)560-2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기능·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방과 후 활동</li> <li>○청소년 상담센터 활동</li> <li>○청소년 복지 지원센터</li> <li>○청소년 동아리활동</li> <li>○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li> <li>○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li> </ul>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
신동읍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방과 후 활동</li> <li>○청소년 상담센터 활동</li> <li>○청소년 복지 지원센터</li> <li>○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 활동</li> <li>○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li> <li>○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li> <li>○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li> </ul>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9-1번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방과 후 활동</li> <li>○청소년 상담센터 활동</li> <li>○청소년 복지 지원센터</li> <li>○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 활동</li> <li>○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li> <li>○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li> <li>○생활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li> </ul>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 <b>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기능·위치</b>			[별표1] <b>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기능·위치</b>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 번지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 번지
신동읍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9-1 번지	신동읍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9-1 번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 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 번지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11-570호

###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정 선 군 수

#### 1. 조 례 명: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1.06.27)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적립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장기예치기금액 적립비율 변경(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총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

나.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변경(안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시행령 제74조가 규정하는 용도로 변경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설방재과(전화 560-2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4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기금관련” 을 “재난 및 기금관련”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③ (생략)</p> <p>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정선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u>기금관련</u>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⑦ (생략)</p>	<p>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재난 및 기금관련</u> -----                      -----                      -----                      -----.</p> <p>⑤~⑦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 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1-08호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05일

정 선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2. 제정취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정선을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발전 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의 중점시책인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시키고자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종합시책수립 추진(안 제3조)
- 다.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원(안 제14조)
- 마. 친환경육성 지원사업 결과 평가 및 시상(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의회의회장(FAX 562-5203)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의회 전문위원실(전화 560-2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 정선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5.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경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선군의회 의원 2인
2. 친환경농업관련 학계전문가
3. 친환경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4. 관내 농업인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친환경농업 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실비등변

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제13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산자, 소비자,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지원) ①군수는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정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사업
4.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사업
5. 관내 각급학교 학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7.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실적

제16조(품질관리) 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17조(소비촉진) ①군수는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행사,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단체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군수는 제14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연1회 평가하고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차등지원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③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공무원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사업자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1-09호

##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05일

정 선 군 의 회 의 장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2011. 7. 14.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선군의회는 정선군의행정사무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현행 7일이내에서 9일이내로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정선군의회가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 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의회의회장(FAX 562-5203)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의회 전문위원실(전화 560-2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1.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1부.  
3. 관계법령 발췌서 1부. - 끝 -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7일”이내를 “9일”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b>7일</b>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③~⑤ (생략)</p>	<p>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b>9일</b></p> <p>- - - - -</p> <p>- - - - -</p> <p>-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